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5가합575988 판결 [보증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피고 건설공제조합

피고보조참가인 파산자 T건설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A

변론 종결 2017. 3. 9.

판결 선고 2017. 3.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9.부터 2017. 3. 3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25%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87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V은 2013. 3. 7. T건설 주식회사(이하 'T건설'이라 한다)와 대구 수성구 B 지상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공사'라 한다)를 T건설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C, D, T건설, E, 주식회사 V은 2013. 3.경 1순위 우선수익자 E, 2순위 우선수익자 겸 시공사를 T건설로 하여 신탁재산인 이 사건 건물과 부지를 운용하여 수익자에게 신탁이익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신탁계약에서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승계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와 주식회사 V, T은 2013. 4. 17. 원고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위를 주식회사 V으로부터 승계하고, 공사대금을 15,730,000,000원, 공사기간을 2013. 4.부터 2015. 1. 말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T건설은 두 번의 계약 변경을 통하여 공사기간을 2015. 5. 말까지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와 T건설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및 승계계약에서, T건설은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정한 계약보증금을 원고 등 도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로 납부하기로 하는 한편(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4조) T건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고(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1조 제1항 제2호), 위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T건설이 공사도급계약 및 승계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보증금은 원고에게 귀속하며,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5조 제1항, 승계계약 제4조), 한편 원고가 T건설에 선금을 지급한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선금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수 있는 것으로(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0조 제5항) 약정하였다.

마. T건설은 2013. 5. 8.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를 피보증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T건설이 부담하는 계약이행의무를 피고가 보증하는 내용의 계약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고서, 피고로부터 보증금액 1,430,000,000원, 보증기간 2013.4. 17.부터 2015. 1. 31.까지로 된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2013. 5. 9.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이후 공사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보증기간이 2015. 5. 31.까지로 변경된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재차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T건설은 2013. 5. 8.경 피고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T건설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선금금반환채무를 피고가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선금금반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보증금액 1,430,000,000원, 보증기간 2013. 5. 8.부터 2015. 1. 31.까지로 된 선금금반환보증서를 발급받아 2013. 5. 9. 원고에게 위 보증서를 교부하였고, 이후 T건설은 이후 공사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보증기간이 2015.5. 31.까지로 변경된 선금금반환보증서를 발급받아 다시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위 각 보증계약 약관 제9조에 의하면, 피고는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고 보증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후 T건설에 선금금 1,4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현재 위

금액 중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지 않고 남은 금액은 447,800,000원이다.

사. T건설은 2015. 2. 하순경 당좌거래가 정지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2015. 3. 19.경 T건설에 이 사건 공사가 재개되지 않아 준공 및 입주의 지연에 따른 피해 발생이 예상된다는 이유를 내세워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가 2015. 3. 20. T건설에 도달하였다.

아. 원고는 2015. 4. 1. 피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과 선급금반환보증금 합계 1,877,8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자. T건설은 2017. 2.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하합1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T건설의 귀책사유로 2015. 3. 20.경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 1,430,000,000원과 선급금반환보증금 447,800,0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및 참가인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 및 참가인은 계약이행보증금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T건설의 공사 중단직후 P산업

주식회사(이하 'P산업'이라 한다)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는데, P산업에 대한 공사대금을 T건설에 대한 잔여공사대금보다 큰 금액으로 정할 만한 사유가 없고, 건물의 준공도 입주예정일보다 9일밖에 지연되지 않았으며 그것도 P산업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어서, 이로써 T건설의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거의 없으므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계약이행보증금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그로 인하여 도급인이 입은 손해 중 계약보증금 범위 내의 손해는 계약보증금의 물취로써 그 배상에 갈음하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가 있으면 그에 대하여 수급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되, 다만 수급인이 배상할 손해액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손해담보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4263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18 내지 20호증,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T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함에 따라 미시공된 채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한 당초의 공사금액은 4,925,800,000원 상당인 사실, 원고는 2015. 3. 20. 위와 같은 미시공 부분에 대하여 P산업에 6,812,300,000원에 도급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P산업이 위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가운데 2015. 5. 12.경 공사기간을 2015.6. 30.까지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5. 7. 9.경 건물에 대한 준공이 이루어진 사실, 원고와 P산업은 2015. 12.경 위 공사부분에 대한 정산을 하여 공사대금을 6,796,900,000원으로 최종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원고에게는 당초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계약금액보다 1,871,100,000원(= 6,796,900,000원 - 4,925,800,000원)의 공사대금을 더 지출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P산업에 위와 같이 당초의 잔여공사 부분에 대한 공사금액보다 큰 금액을 지급한 것이 T건설의 책임이 아닌 원고나 P산업의 책임에 기인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을제1, 제2의 1, 2,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해지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이 계약이행보증금의 액수를 넘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기보다는 손해의 담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계약이행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전제에서 그 감액을 주장하는 피고 및 참가인의

위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및 참가인은 선급금반환보증금청구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해지 당시 T건설은 원고로부터 기성공사대금 중 600,6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또한 원고가 T건설에 지급하지 않은 공사유보비가 982,200,000원에 이르렀으므로 당시의 선급금 잔액 477,800,000원에서 위 합계 1,582,800,000원을 공제하면 반환할 선급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갑 제2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와 T건설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선급금반환청구를 할 때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금액에 우선 충당하기로 약정한 사실(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0조 제6항), T건설의 시공에 따른 2015. 2.분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이 600,6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원고의 선급금잔액 477,800,000원은 2015. 2.분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에 모두 충당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및 참가인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 1,4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을 구한 날(2015. 4. 1.)로부터 7일을 경과한 날인 2015. 4. 9.부터(피고가 보험료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하고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보험금은 원고로부터 청구를 받은 날 결정된다고 본다.)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3. 30.까지는 상법상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값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춘호, 판사 김진희, 판사 차기현